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03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23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3일, 이영실 의원 외 27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4년 4월 23일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이영실 의원]

### 가. 제안이유

- 시장은 도시공원의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책무가 있는바, 이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

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로 위험시설의 정비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1)과 제5항2)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고 있어 이를 구분하고,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2항(이동)으로 구체화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세부적으로 안 제3조제2항은 “어린이놀이시설 내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”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단순 시설물 유지관리보다 직접적인 안전 환경조성을 구축하도록 하였음.

이에 따라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 전반에 걸쳐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기준 정립과 노후 위험시설 정비 등 환경·조경계획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31조제1항 및 별표 5 공원·녹지의 사무구분에 따라 ‘어린이공원’은 구청장 소관이므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.

---

1) 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, 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2) 제3조(책무) 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(이하 "놀이시설"이라 한다)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”를 “놀이환경 조성 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”를 “자유롭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, 제5항 및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”을 “있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(중전의 제5항) 중 “유지·관리”를 “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놀 권리, 쉼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<u>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, <u>안전한 가운데 자유롭게</u>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자유롭게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<p>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·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,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<u>절차를 마련하도록</u>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있도록</u> ----- 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<p>⑤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(이하 “놀이시설”이라 한다)을 이용할 수 있도록 <u>유지·관리</u>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위</u> ----- ----- <u>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</u> -----</p>

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---.